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53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양금희・김예지・강민국

임이자 · 김용판 · 이 영

강대식 • 윤두현 • 지성호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승계한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 중 최대 500억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 경감, 기업의 존속에 따른 일자리 유지, 핵심기술의 전수 등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음.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가업상속 공제한 도가 현실적으로 적고, 가업을 물려 받은 이후에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기간 및 요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가업상속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은 기업이 드물어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임.

이에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고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며, 가업용 자산의 처분가능 비율 을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법률 제 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천억원"을 "1조원"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200억원"을 "500억원"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300억원"을 "700억원"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500억원"을 "1천억 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20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1) 및 2) 중 "7년간"을 각각 "5년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① (생 략)	제18조(기초공제) ① (현행과 같
	<u>수</u>)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2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	
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	
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	
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	
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	
액이 <u>3천억원</u> 이상인 기업은	<u>1조원</u>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	

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 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u>500</u> <u>억원</u>
- 2. (생략)
- ③ ~ ⑤ (생 략)
-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フト
•
<u>500억원</u>
나
700억원
다
1 <u>천</u>
<u>억원</u>
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혀해과 같음)
③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6
6
⑥—
6
⑥—
6
6
6
6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 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 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 다.

-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 라. (생 략)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u>7년간</u>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

1
가100
<u> 100</u>
분의 20
<u>분의 20</u>
는의 <u>20</u> 나. ~ 라. (현행과 같음)
는의 <u>20</u> 나. ~ 라. (현행과 같음)
는의 20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는의 20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1)
는의 20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는의 20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1)

2) 상속이 7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	부터	<u> 7년간</u>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	액에	미달하
는 경우		

9	(x1)	략)
Δ.	(생	4)

$\overline{(7)}$	\sim	(11)	(생	략)
(1)		(T T)	\ ()	

2)
<u>5년간</u> -
현행과 같음)

- 2. (
- ⑦ ~ ① (현행과 같음)